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 제 1 3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4가합24239 구상금

원 고 A 외 4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허△△

피 고 C 외 56

피고 1.~22., 24.~32., 34.~55., 5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15. 7. 1.

판 결 선 고 2015. 10. 14.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각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각 8,942,5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장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1. 7. 8. B산업 주식회사(이하 'B산업'이라 한다)와 공사도급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B산업은 위 조합에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58,359,025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sup>1)</sup>)에 따라 2014. 1. 1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B산업은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던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조합은 B산업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외에 특별한 적극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 2. 행정법원으로의 이송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행사하는 사업비분담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공법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가 조합을 상대로 협의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현금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두3959 3 판결 등 참조)와 같이 소송물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정비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 사적 자치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 청구 내지 비용분담 청구는 사법상의 금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이 B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각 연대보증 아래 차용한 금액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수탁보증인인 원고들은 주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전 구상권을 갖는바, 이를 보

전하기 위하여 현재 자력이 없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비용부담금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반대해석상 예산 내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과 무관하게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 등 비용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조합이 시공자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을 명시한 위 정관 제33조 제4호 등의 해석 및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라 매몰비용을 정산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을 위한 총회 결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인 피고들에게 비용부담금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 나. 판단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등 대위 요건

2014. 1. 16.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B산업이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함께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에서 '조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약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34조 제2항 제4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조합은 B산업으로부터 차입한 제반 사업경비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제34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B산업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위 각 가압류 무렵에는 계약 해지로 인한 기한 이익의 상실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원고들

은 주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 납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한편, 위 정관 제33조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부과금 또는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정관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구체적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4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법인인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

#### 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용청구 또는 부담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총회결의 등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조합원총회에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거나 비용부담 결정 안건을 부결시켜버린다면 채권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도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들 주장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채무를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65748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나5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화

판사

김노아